

제 1490 호
1990 5. 1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고 건수
편집인 : 공보관 유 천수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시보

차 례

◎ 조 례	
제 2615 호 서울특별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	3
◎ 공 고	
제 256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3
제 285 호 건축허가제한공고	3
제 289 호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해제	4
◎ 구 고 시	
제 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영등포)	5

(이면계속)

공																			
합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1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중구)	5
제 13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양천)	6
제 14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송파)	6
제 2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인가(동대문)	6
제 2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은평)	7

◎ 구 공 고

제 32 호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식해제공고(양천)	7
제 40 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구로)	8
제 4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구로)	8
제 4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영등포)	8
제127호	관인개각및폐기공고(노원)	9
제 4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구로)	10
제 7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은평)	11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5. 11

서울특별시장 고건

◎서울특별시조례제2615호

서울특별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문화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중 "대학교장"을 "대학교총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1차 투표에서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를 하며, 3차 투표에서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서의 다수득표자를 수상후보자로 선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256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제13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양도인가를 하였고 공고합니다.

1990. 5. 13

서울특별시장

전문건설업 양도인가 **지역**

업종 및 면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일 가 일
	상호	대표자	소 계 지	상호	대표자	소 계 지	
설비공사업 82-12-99	(주)에라신 엔지니어링	문명열	중구 충무로5가 79-2	태구 건업(주)	남두현	종로구 승인동 234-86	'90 5. 3

◎서울특별시공고제285호

건축허가제한공고

건축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내건축허가를 다음과 같이 제한함을 공고합니다.

1990. 5. 14

서울특별시장

1. 제한목적: 건축자재(시멘트)의 수급 불균형 조절

2. 허가제한기간: '90.5.15 - '90.9.30

3. 대상구역: 서울특별시 전역

4. 제한대상건축물

가. 위탁시설

- 1) 일반유흥음식점: 전문음식점, 간이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것
- 2) 무도유흥음식점: 무도장, 교습소,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 기타 이와유사한것
- 3) 특수목욕장
- 4)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당구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것.
- 5) 투전기업소

나.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 호텔, 여관, 여인숙
 2)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가족호텔, 해상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판매시설 :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규모소매점(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라. 근린생활시설중 의료법에 의한 안마시술소
 5. 제한행위 : 상기 용도 건축물의 신축, 증축(용도변경 포함)
 단, 기존시설의 1/10이내의 증축으로서 그 면적이 100㎡이내일 때에는 제외함.

◎서울특별시공고제269호
주래건설사업자 영업정지 해제

다음 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해제되었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0. 5. 14
 서울특별시청

대 상 업 체

일련 번호	등 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영 업 정 지 일 자	영 업 정 지 기 간	영 업 정 지 해 제 일 자	근 거 법 령 (주축법)
1	78-152	광진종합 건 설 (주)	이상원	동대문구 신설동 92-25	'90 3. 12	'90.3.12- '90.4.11	'90. 4.12	주택건설 촉진법
2	86-21	(주)세양주택	조필제	동대문구 신설동 114-25	"	"	"	시행령 제10조의3
3	87-22	(주)신근대	선용연	동대문구 용두1동 64-1	"	"	"	"
4	87-25	(주)동심주택	김진택	동대문구 장안동 412-4	"	"	"	"
5	87-28	(주)명산주택	박해관	동대문구 달십리5동498-1	"	"	"	"
6	88-299	우림주택(주)	노수문	동대문구 용두동 740-2	"	"	"	"
7	88-304	동 남 주 택	조성진 여원동 신용옥	동대문구 장안동 462	"	"	"	"
8	78-119	재일주택사	황만복	동대문구 신설동 97-22	"	'90.3.12- '90.5.11	'90. 5.12	"
9	84-291	(주)두산주택	신승만	동대문구 신설동 109-12	"	"	"	"
10	84-641	(주)청원주택 건 설	권태용	동대문구 청암리동 750	"	"	"	"

일련 번호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영 업 정지 일자	영 업 정지 기 간	영 업 정지 해 일	근 거 법 (주속법)
11	86- 16	청산공영(주)	윤정일	동대문구 신설동 103-6	'90 3.12	'90.3.12- '90.5.11	'90.5.12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
12	86- 126	일명종합 건설(주)	윤진식	동대문구 장안동 430-3	"	"	"	"
13	88- 301	(주)메이트 코리아	양준환	동대문구 용두동 232-20	"	"	"	"
14	88- 302	(주)한명건설	배우수	동대문구 답십리5동 492-1	"	"	"	"
15	88- 303	(주)우암주택	송수혁	동대문구 답십리4동 961-9	"	"	"	"

구 고 시

●영등포구고시제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 고시 제768호('64.1.24), 동고시 제41호('67.7.21)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신길동 199-202간 도로의 도시계획사업을 실시코자 영등포구 공고 제35호('90.4.13)로 공람공고 완료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 동법시행령제6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2413호('89.1.30)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인가 합니다.
2. 관련 도서는 영등포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5. 11

영 등 포 구 청 장

- 인 가 내 용 -

- 가. 사업시행지: 신길동 19J-202간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도로)보상시행
- 다. 사업규모: 도로개설 B=6.8m, L=180m
- 라. 사업시행기간: 인가일-'91. 2. 23
- 마. 사업시행자: 영등포구청장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사: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증구고시제1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증구공고제27호('90.4.10)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였기에 동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증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5.

증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신당동 375-16~신당동 375-25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명칭: 신당동 375번지 주변 소

방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폭 B=8m, 연장 L=38m

라.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다.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한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여의의 권리의 명세 : 별항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의 토지 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항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
 ○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15-21와 26필지
 ○ 면적 : 10,066.29㎡
 ○ 규모 : 아파트 14-20층 2동 262세대
 4. 사업시행기간 : '90. 5 - '92. 3

●양천구고시제13호

●송파구고시제14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1990. 5. 12

1990. 5. 10

양 천 구 청 장

송 파 구 청 장

- 다 음 -

- 다 음 -

-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2. 사업주체 : 서울 철도차량정비창 제2직장 주택조합의 5개 조합
- 3. 사업시행 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1. 사업명 : 거여동 남산직장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 2. 사업주체 : 남산직장주택조합의 3개조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위 치	송파구 거여동 358번지의 9	좌 동
대 지 면 적	4,095.69㎡	21,623.74㎡
건축연면적	8,665.14㎡	57,175.078㎡
규 모	지하1층, 지상13층 1개동 83세대	지하1층, 지상15층 5개동 497세대
용 도	아파트 및 부대시설	

4. 사업시행기간 : 1990. 5 - 1991. 11

●동대문구고시제20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인가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9호('90.4.9)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공람공고 한바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83의 1-324의15호간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도로)에 대하여,
- 2.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3.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9호('90.4.9)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공람공고 한바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83의 1-324의15호간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도

1990. 5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동대문구 답십리동 483의1-324의 15호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명칭 : 답십리동 132-294간 도로개설 공사
 다. 사업의규모 : B=10m, L=50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인가일-1991. 12. 30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은평구고시제24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75호 ('90.3.20)로 시설결정되고 (서울)은평구 고시 제19호 ('90.4.12)로 지적승인된 불광동 426-168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을 실시코자(서울)은평구 공고 제59호 ('90.4.17)로 공람공고 완료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2413호의 규정에 의거 본사업을 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5. 14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은평구 불광동 426외23-115의2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불광동 426-168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로개설 B=6m, L=156m
 라. 사업의 시행자 : 은평구청장
 마. 사업의착공 및 준공예정일 : '91.3-'91.12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및 지장물 조서 : 별첨
 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아. 보상계획
 1) 보상시기 : '90. 5월부터
 2) 감정평가 금액으로 계약체결 요구일로부터 2개월이내 협의취득
 · 보상지급방법
 토지 : 계약과 동시 보상금 전액지급
 건물 : 계약과 동시 70%지급, 철거후 잔액지급
 3) 협의 불응시 토지수용법 제25조 2항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

구 공 고

●양천구공고제32호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해제공고
 주택건설 촉진법 제7조 3호에 의거 '90. 2. 26 영업정지 처분된 주택건설 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0. 5
 양 천 구 청 장

- 다 -

등 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영업정지 기간	영업정지 해제일	근 거 법 령
88-317	영진프라자 건설(주)	김길태	신경동 992-4	'90. 2. 26 - 4. 25	'90. 4. 26	주축법시행령 제10조의 3
86-401	부천주택(주)	정상진	목동 641-12	"	"	"

●구로구공고제40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

1. 도시계획법 제16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2규정에 의거 구로구 도시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관련도서를 보입니다.

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안

번호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1	신설	소로	3	5	130	개봉동산17-9	오류동59-1	대체도로
	폐지	"	3	6	142	개봉동74-8	오류동63-1	
2	신설	소로	3	6	100	은수동53-2	은수동45-31	대흥빌라진입로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나. 공람기간 : '90. 5 - '90. 5

다. 관련도서 : 공람장소 비치 내용과 같음

1990. 5

구로구청장

●구로구공고제42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25호 ('72.11.10)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및하수도)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5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1990. 5. 11

구로구청장

- 공 램 개 요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1동 산2-11~오류1동 14-37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및 하수도) 남부순환도로-경인국도간 도로개설 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로포장B=20m, L=370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5. 사업확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90.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 공 램 개 요 -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의 시 행 지	사 업 규 모	사 업 시 행 기 간
신길동 302-278간 도로 개설 공사	신길동 302의14 278의2 간	B=6-8m L= 280m	인가일 - '92.12월

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성명 :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영등포구공고제4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768호('64.1.24), 서울시 고시 제32호 ('70.7.25) 및 서울시 고시 제211호 ('75.12.19)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신길동 302-278간의 2개소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을 실시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도로) 실시계획을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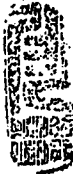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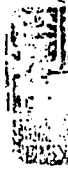




2.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게는 이공고로 같음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5. 11

영등포구청장

사 업 명	사 업 의 시 행 지	사 업 규 모	사 업 시 행 기 간
신길동 3741-2761간 도로 개설 공사	신길동 3741- 2761간	B=6m, L=100m	인가일-'92. 12월
대림동 974-942간 도로 개설 공사	대림동 974의 1- 942의5간	B=8m, L=250m	인가일-'92. 12월
<p>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다.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별첨 마.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 관계인 의 주소, 성명: 별첨</p> <p>●노원구공고제127호 관인 개각 승인 및 폐인 공고</p> <p>서울특별시 노원구 관인 규의 제2, 3, 5조 에 의거 공통제2동의 3개 동장 직인 및 계인 을 개각 사용 승인하고 동 규칙 제6조에 의 기 기사용중인 관인을 폐인조치하고 동 규</p>		<p>칙 제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p> <p>1990. 5. 10 노 원 구 청 장</p> <p>가. 관인 개각 기관 및 관인명 ○ 공통제2동장 인 및 계인 (일반, 민원사무용) ○ 상계제3동장 인 및 계인 (민원 사무용) ○ 상계제5동장 인 및 계인 (민원 사무용) ○ 상계제6동장 인 및 계인 (민원 사무용)</p> <p>나. 사용 개시일: 1990. 5. 11 09:00 다. 개각 및 폐기 관인 인영</p>	
인 영	신		규
			
공인명	공 통 제 2 동 인 및 계 인		공 통 제 2 동 장 인 및 계 인 (민 원 사 무 전 용)
인 영	신		규
			
공인명	상 계 제 3 동 장 인 및 계 인 (민 원 사 무 전 용)		상 계 제 5 동 장 인 및 계 인 (민 원 사 무 전 용)

인 영	계 기			
				
공인명	공 통 제 2 동 장 인 및 계 인		공 통 제 2 동 장 인 및 계 인 (민 원 사 무 전 용)	
인 영	신 규		계 기	
				
공인명	상 계 제 3 동 장 인 및 계 인 (민 원 사 무 전 용)		상 계 제 5 동 장 인 및 계 인 (민 원 사 무 전 용)	
인 영	신 규		계 기	
				
공인명	상 계 제 6 동 장 인 및 계 인 (민 원 사 무 전 용)		상 계 제 6 동 장 인 및 계 인 (민 원 사 무 전 용)	
<p>◎구로구공고제41호</p> <p>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실시 계획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3호 (69. 1. 18)로 시 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수도)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p>			<p>같이 공람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5. 구 로 구 청 장 - 다 음 -</p> <p>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동 551-570번지</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구로동 551-570 번지간 도로개설공사</p>	

다. 사업규모: 도로포장 B=8m L=80m
하수도(D=450%) L=80m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90. 4. 1 - '90.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조서

사. 토지 소유주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성명: 별첨 토지조서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며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90. 5. 14
은 평 구 청 장

- 공 랑 개 요 -

가. 사업명: 대조동 84-88간 도로확장공사
나. 위치: 대조동 88의 319-88의 322간
다. 사업규모: 도로개설 B=6m L=30m
라. 사업의 시행자: 은평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90. 5 - '92. 2. 28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조서: 별첨

◎은평구공고제7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공 랑 공 고 (추 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75호('90. 3. 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서울)은평구 고시 제19호('90. 4. 20)로 지적승인된 대조동 84-88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사 령

◎1990년 5월 11일자 기능직공무원 전보 명 제166호

성 명	발 행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용 해	회 계 과	총 무 과	지방사무보조원 (조무: 10등급)

4급 공무원 전보 명 제167호

성 명	발 행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원 세 훈	주택기획과장	감 사 2 담 당 관	서 기 관
윤 치 중	감사2담당관	주 택 기 획 과 장	"
이 상 익	강서구 재무국장	동 대 문 구	지 방 서 기 관
이 상 식	동대문구 재무국장	관 약 구	"
최 영 태	관악구 재무국장	종 로 구	"
김 광 수	종로구 시민국장 직무대리	봉 계 담 당 관	서 기 관
윤 정 중	도봉구 재무국장	보 험 연 금 과	"
최 회 주	보험연금과장 직무대리	노 원 구	지 방 서 기 관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명우	노원구 시민국장	새종문화회관	지방서기관
이균우	새종문화회관 서무과장 직무대리	운영과	"
옥유형	성동구 시민국장	구로구	"
이종인	구로구 시민국장	상동구	"
이보규	성동구 건설국장	기획담당관	"
◎1990년 5월 12일자 5급 공무원 전보 명 제16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성종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계장	시정개발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장수길	시정개발담당관 조직관리계장 직대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전귀권	부녀복지과 부녀행정계장	교통기획과	지방행정사무관
◎1990년 5월 14일자 4급 공무원 직위해제 명 제16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명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90. 5. 14-’90. 8. 13까지 내 무국 대기근무명 명함)	종합건설본부	지방시설기정
◎1990년 5월 15일자 2급 공무원 직위해제 명 제17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영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90. 5. 15-’90. 8. 14 내무국대기 근무명 명함)	도시계획국장	시설기감
변의경	"	동대문구청장	이사관
공무원의 여행 명령 통보			
◎1990년 5월 12일자			
여행자			
소속	직명	성명	여행국
국제교류과	지방서기관	박용래	북경
			여행기간
			‘90. 5. 17 - 5. 26 (10일간)
			여행경비
			시비 (2,143불)
			여행목적
			북경아시아 대외 사전조사
서울특별시			